## KOSHA GUIDE

C - 77 - 2013

장치, 그 밖의 방호장치[파이널 리미트 스위치(Final Limit Switch), 조속기, 출입문 인터 록(Inter Lock) 등]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.

- (6)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,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(가)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
- (나)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(또는 보관고)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
- (다)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·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
- (라)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
- (마)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
- (바)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·사용할 것
- (사)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
- (7)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,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(가)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, 과부 하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나)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된다.
- (다)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 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라) 지반침하,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무너지거 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마)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 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무너짐 등을